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26-358호

2026년 제3차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국립수산과학원장

1 선발예정인원

※ 아래 지원코드 중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하며, 여러 코드에 중복 지원할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용기관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국립수산과학원	수과원01	행정	1	6개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강릉)
	수과원02	수산	1	6개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강릉)
	수과원03	수산	1	6개월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소(제주)

가. 근무조건

○ (신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2026년 12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최대 6개월이며 세부사항은 조정 가능

○ (보수)

- 26년도: 월 2,156,880원(세금 공제 전, 식비 포함)
- 27년도: 월 2,236,300원(세금 공제 전, 식비 포함)

※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 지급

○ (근무시간) 주 40시간(주5일, 일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출퇴근 지원 및 숙소지원 없음

나. 주요 업무 내용

※ 담당 업무와 정책참여활동을 병행할 수 있으며, 주요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코드	채용 분야	근무부서	담당 업무
수과원01	행정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강릉)	ㅇ 기록물 정리 및 관리 ㅇ 청사시설 안전관리 보조 ㅇ 기타 사무보조 업무
수과원02	수산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강릉)	ㅇ 양식생물 사육관리 ㅇ 수산과학연구 보조(시험 분석, 데이터 정리등)
수과원03	수산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소 (제주)	ㅇ 수산과학연구사업 업무보조 (실험, 분석, 데이터 정리 등) ㅇ 제주 연안 서식종 생체 측정 등 ㅇ 연구실 분석 장비 및 소모품 관리

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①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 이상 : 3세 연장

② 아래 응시 제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2회)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 단, 2023~2024년에 2회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3회차 참여기회 부여

※ 참여횟수 및 근무기간 확인을 위해 기존 참여 이력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경우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 ㅇ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ㅇ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ㅇ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 준용)

❖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인사관리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나. 가산 요건 : 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 등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항목	구 분	부가 점수
법정 가산점 (취업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 (※ 중복인 경우 유리한 하나만 인정, 최대 10%)
사회 형평 가산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만점의 3% (※ 중복인 경우 유리한 하나만 인정, 최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산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산점 항목별로 중복 가산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산점만을 적용함)

※ (**법정가산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제한사항, 가산비율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법정 가산점은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사회형평가산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가산점 인정 조건(계속하여 2년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또는 수급이력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점 미인정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1. 인턴지원서(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직무관련 역량 및 경험, 문제해결력 및 도전정신,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성실성 및 참여의지), 2. 가산 요건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서'<별지서식 제8호>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제안서 주제는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정책·사업·제도 제안 또는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서술

*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정보' 등 참고

< **면접시험 평가 방식** >

- (**평정요소**) ① 참여의지 및 진로연계성, ②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 ③ 정책제안의 참신성·실현가능성, ④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 ⑤ 공직에 대한 책임감 및 윤리의식
- (**평가방식**) 개별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4 시험 일정(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시험공고 : 2026. 11. 2.(월) ~ 11. 12.(목)

○ 원서접수 : 2026. 11. 10.(화) 09:00 ~ 11. 12.(목)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6. 11. 19.(목)

○ 서류전형 합격자 정책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26. 11. 19.(목) ~ 11. 23.(월)

※ 위 기한 내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접전형 응시 포기로 간주하며,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는 정책제안서는 인정하지 않음

※ 정책제안서 제출 방법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면접시험일 : 2026. 11. 24.(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6. 11. 30.(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청년인재DB(www.2030db.go.kr), 해양수산부 누리집,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6. 11. 10.(화) 09:00 ~ 11. 12.(목) 18:00

○ 접수방법 : 청년인재DB 내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청년인턴 채용' 공고에 신청

※ 신청 전 청년인재DB(www.2030db.go.kr)에 가입 필요

※ 등기우편, 방문, 택배·퀵서비스, 이메일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시기	비고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최초 접수 시	ㅇ 별지서식 제1호
	청년인턴 응시원서	최초 접수 시	ㅇ 별지서식 제2호
	청년인턴 지원서	최초 접수 시	ㅇ 별지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최초 접수 시	ㅇ 별지서식 제4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병역사항 표기)	최초 접수 시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응시연령을 연장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등본'이 아님에 유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최초 접수 시	ㅇ 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 발급 본 (별첨 발급 방법 참조)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최초 접수 시	ㅇ 별지서식 제5호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최초 접수 시	ㅇ 별지서식 제6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최초 접수 시	ㅇ 별지서식 제7호
선택	**(해당자)** 가산요건 관련 증명서	최초 접수 시	ㅇ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산점이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서류전형 합격자	**(필수)** 정책제안서	'26.11.23.(월) 까지	ㅇ 별지 서식 제8호

※ 아래에 해당할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

- 서류 자필 서명란에 서명 없이 제출한 경우(서명 파일이 깨진 경우 포함)
- 주민등록초본이 아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뒷자리, 병역사항란이 없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 법적 효력이 없는 열람용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필수 서류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 제출서류 내 파란색 표시된 부분을 모두 삭제한 후, 위 순서대로 1개의 PDF 파일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제출

6 유의사항

○ 동일한 기간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절차는 기관별로 개별 진행하므로 지원하는 기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로(☎ 051-720-204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제출서류 작성요령

※ 작성요령은 제출 불필요

2 응시원서

○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지원기관,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기관,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 지원코드 : 수과원01 / 채용분야 : 행정

○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 주소 : 현재 거주하고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장소를 정확히 기재

- 우편물 수령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 휴대전화·이메일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연락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해당란에 표시

- 가산요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점 불인정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 202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근무기간은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상 취득일~상실일 기준으로 산정)

3 청년인턴 지원서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기울임 ×)

○ 서식에 *기울임*으로 표시된 항목은 삭제한 후 제출

○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및 학력, 자격증, 시험 성적 등 작성 금지

○ 작성 금지 사항을 기입할 경우 부적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 가능

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채용기관 :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기관명은 본인의 지원코드에 맞는 기관명을 기입

채용기관	기관명	국립수산과학원	채용방법	일반경쟁	채용직위(직급) 청년인턴
	채용사유	2026년 청년인턴 채용(3차)			

○ 채용대상자(확인인) > 채용 예정일 : ‘26.12월 초(예정)로 작성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1번 질의에 예로 표시하였을 경우, ②번 표시 필요
- ①-1번 질의에 아니오로 표시하였을 경우, ②번 표시 불필요
- ①-2번 질의는 해당없음에 표시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없을 경우, 1번만 비해당에 표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미표시

* 공직자는「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3호에 따르며, 청년인턴은 공직자가 아님

○ 공직자로 재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 1번에 해당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에 해당/비해당 중 택 1하여 표시

- 2, 4-3번 질의 필수 작성, 나머지 항목은 앞 번호 질의에 해당으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만 작성

<별지서식 제1호>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번호
※ 채용담당자 기재

지원기관	지원코드	채용분야	생년월일	성 명	연락처

□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

목 록	제출	미제출
< **필수사항** >		
1.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2. 청년인턴 응시원서	□	□
3. 청년인턴 지원서	□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5. 주민등록**초본**(남녀 모두 제출, 병역사항 포함) 1부	□	□
6.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	□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
8.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	□
9.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	□
< **해당하는 경우** >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서	□	□

※ ***제출서류 목록표를 포함하여 위 번호 순서대로 1개의 PDF 파일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제출***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1. 지원분야							
응시번호		지원기관		지원코드		채용분야	

2.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도로명)	(우)				
휴대전화		이메일			

3. 가산요건

※ 아래의 내용중 해당사항에 ✔ 표기 하십시오

☐ 취업지원대상자(5%) ☐ 취업지원대상자(10%) ☐ 사회형평대상자

4.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중앙행정기관명	실제 근무지	근무기간	합산 기간
예 : 산림청	*국립수목원*	*2025.3.4.~2025.8.31*	*6개월*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1.「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가산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별지서식 제3호>

청년인턴 지원서

응시번호		지원기관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 해당 기관 및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

-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본 인턴 경험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술

◎ 직무 관련 전문성 획득을 위한 활동 내용

- 지원한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 및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 출신학교, 자격증, 시험(어학 등) 성적 등은 언급하지 말고 행동과 경험 중심으로 작성

◎ 문제 해결 경험

- 일상생활, 학교, 아르바이트, 동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했던 경험 서술

-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서술

◎ 소통 및 협업 능력

-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 서술

◎ 기대하는 점 및 각오

- 청년인턴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청년인턴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서술

<별지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취업지원대상, 사회형평 가산 대상 등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가산점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5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①-1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①-2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식 제6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지원기관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7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응 시 자 (서명)

<별지서식 제8호>

※ 서류전형 합격자만 작성(작성 방법 및 제출 기한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고지)

정책제안서

지원코드		성 명		연락처		e-mail	

제 목	
제안 배경 및 문제점(현황)	
개선안 또는 정책대안	
예상 효과	

참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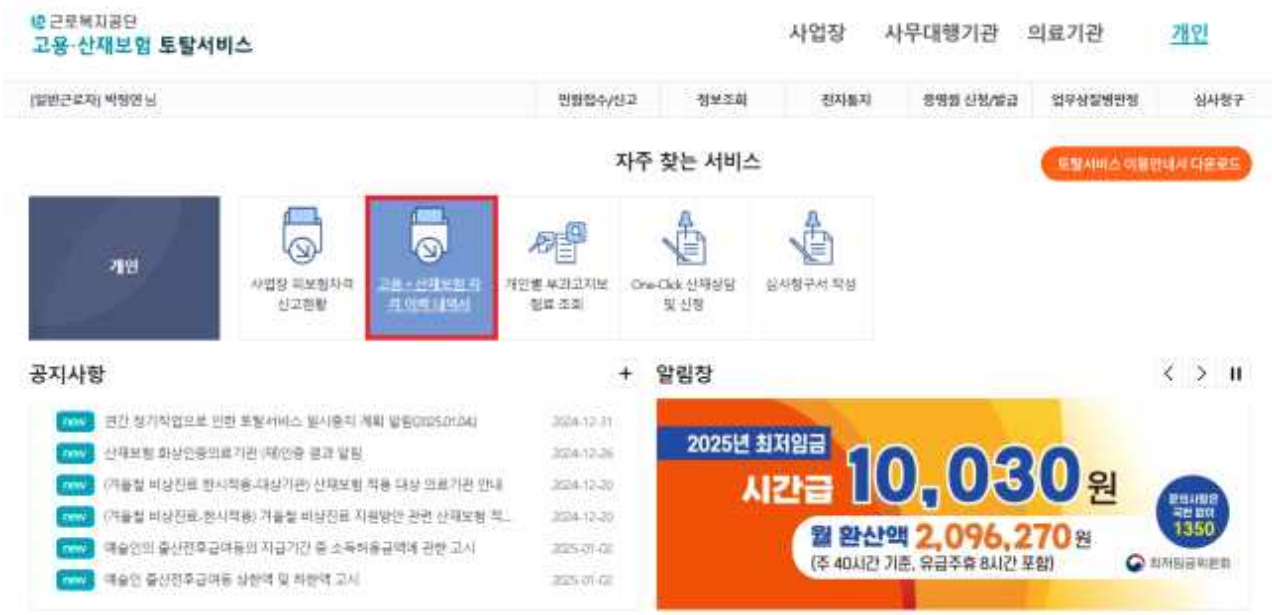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②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로그인



③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④ 보험구분 중 ‘**고용**’ 선택 → 조회구분 중 ‘**상용**’ 선택 → 조회

⑤ 직종포함여부 ‘**예**’ 선택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인쇄)**’ 신청 선택



예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피보험자용)

발급번호	0000-2025-01 55	발급일자	2025년 01월 03일	접수번호	0000-2025-7 J
신청인	성 명	박	생년월일	년 10월 30일	
조회기간	전체 (조회기간 총 2개 이력 중 2개 이력 선택 발급 요청)				

일련번호	직종명(코드)	사업장 명칭	취득일/전근일	상실일	비고
1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025)	국무조정실	2024-09-02		근로자
2					근로자

※ 본 자료는 산재보험·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피보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없이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과 금융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발급 증명원의 진위여부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국민소통-민원/조회-증명원 진위확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자격내역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1월 03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